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72
----------	-------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전진숙·박균택·손 솔
권칠승·이주희·전종덕
서삼석·이개호·백혜련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참사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그 후유증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과 같이 지급기간을 제한할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해당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생활지원금 등) ① · ② (생 략)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10조(생활지원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이 경우 제 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해당 치료, 간병 또는 보 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 으로 한다.